

## 경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급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전임교원(조교수 이상의 교원)에 대한 연구비 및 연구활동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비 및 연구활동지원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는 교원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교원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비이다.
2. 자유공모과제 연구비는 대학발전을 위한 업무개발, 교육과정개발, 기타 응용 학문 과제를 대상으로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하여 보다 우수한 연구과제를 공개적으로 발굴, 이를 지원함으로써 대학발전과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비이다.
3. 연구활동지원금은 학술연구의 동향분석 및 정보제공,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거나 출판하도록 장려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이다.

**제3조(지원액)** 연구비 지원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 제2장 연구비

**제4조(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연구비의 지원 분야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02.>

1. 지원분야 : 학술연구논문, 학술저(역)서 초판, 자유공모과제(예능계 작품전시·발표, 대학정책연구, 연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
2. 지원대상 : 경운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연구년 교원 중 교류교원은 포함)

**제5조(연구비)** 연구비는 정액연구비와 일반연구비로 나누어 구분 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연구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위원회 및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연구비의 신청방법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3.01.>

1. 신청기간 : 소정의 기간 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종합하여 산학연구처(이하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 2. 신청자격 : 조교수 이상의 교원

가. 연구책임자 본인의 연구과제에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 배우자 등)를 참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공 지식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연구과제의 특성상 연구참여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산학연구처장에게 연구계획서 및 특수관계자 연구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다만, 연구과제와 직접 관계없는 행정업무 및 단순 실험보조의 경우에는 불허한다.)

## 3. 신청자격 제외자

- 가.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종료일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논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나.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당해연도의 교비파견교수, 국비파견교수, 박사 후 연구교수, 파견교수, 국내교류교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출장이 예상되는 자
- 다. 연구기간 중 퇴직이 예상되는 자

## 4. 구비서류

- 가. 교내학술연구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나. 연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다. 연구계획 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 5. 신청시 유의 사항

- 가. 연구결과물에서 학술저(역)서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출판물로서 출판사에서 인쇄되고, ISBN 번호가 부여된 출판물에 한한다.
- 나. 전 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한다.
- 다. 전시회의 경우 신작으로 구성된 공동 작품전 또는 발표회로써 피평가자의 작품수가 10점 이상 되어야 한다.

**제8조(심사 및 선정)** 지원신청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하고, 연구비의 감액조정, 연구계획의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 가능성
4. 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
5. 연구행정 지원정도

**제9조(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선정 시, 중간보고 또는 연구결과 보고 시 지급한다.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비 사용 및 대한 정산)** ① 연구비는 승인된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집행 할 수 있다.

③ 연구비사용에 대한 정산은 연구결과물 제출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실시함으로써 정산생략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액연구의 경우 연구비 사용내역서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9.12.02.>

**제12조(연구기자재 등의 구입 및 귀속)** 예산계획에 따라 연구기자재, 소프트웨어, 비품, 도서 등의 구입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르며, 본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소프트웨어, 비품, 도서 등은 학교의 재산으로 등록하여 귀속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보고)** ① 연구논문의 경우,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에 명기된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하고, 예능계의 경우 전국 또는 외국의 공인된 장소에서 개최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발표 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물은 반드시 연구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지원대상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 기준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12.1>

③ 연구결과물이 연구논문인 경우, 투고논문의 제출 및 게재확정 시한은 연구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한다.

**제14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연구논문의 경우 교내외 각종 연구논문집에 게재하는 것으로서, 저(역)서는 공식적으로 출판하는 것으로서 평가를 대신한다.

② 기타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교내학술연구비지원의 제한)**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대한 제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우리대학교 교원이 참여하고 있는 교외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과제는 동일 연구과제로 교내학술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2. 우리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정부지원사업에서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과제는 동일 연구과제로 교내학술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제16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비 지원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1. 부당한 행위 또는 허위기재 등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허위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3.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원이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연구결과가 교내학술연구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5. 우리대학교 전임교원(조교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
6. 약정한 기한 내에 연구결과물과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7. 동일과제로 이중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17조(연구비 반환)** ① 산학연구처장은 제16조 규정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한 연구비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를 통지받은 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반환 시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지원연구비 총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연구위원회 및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연구활동지원금

제19조(연구활동지원금) 국내외 학술회의 참가비, 논문집 발간비를 지급한다.

제20조(연구비 및 지급금액) 연구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9.12.02.>

구 분	지 원 기 준	지 원 금	비 고
국외 학술회의 참가 1)	세계 전지역	30만원	
국내 학술회의 참가 2)	학술회의 참가비 지원 3)	지원금은 장소에 따라 별도로 정함 (등록비 별도)	
논문집 발간	부설연구소 논문집 발간 지원	발간비 전액	

1. 국외학술대회 참가자는 참가전 학술회의참가지원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한 자는 학술회의참가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와 참가확인서 또는 등록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내학술대회 참가자는 참가 전 학술회의참가지원신청서(별지 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한 자는 학술회의참가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와 참가확인서 또는 등록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술회의 참가 지원금(등록비 별도)은 다음과 같다.
  - 가. 서울, 경기, 강원, 제주는 120,000원
  - 나. 대구, 경북지역은 40,000원
  - 다. 그 외 지역은 80,000원
  - 라. 등록비는 한도는 3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지급방법) 지원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장 보 칙

제22조(교내학술연구비지원의 제한 및 지급) 교외학술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과제는 동일한 연구

과제명으로 교내학술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연구비 지급) 2012년 2학기 일반연구비 지급은 2013년 3월 지급 완료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2019.12.0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2021.03.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